

## 4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 [ 제주 예술인 ]

### 1 사업 목적

-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득 감소 등 피해를 입은 도내 문화예술인\*에게 긴급 생계자금 지원

\*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

### 2 지원 내용

- 제주예술인: 1인당 80만원 지급

### 3 지원 대상 및 요건

- (유형 1) 공고일 주민등록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,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
- (유형 2) 공고일 주민등록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, 최근 5년 이내 문화예술활동 실적 1건 이상인 장애예술인

#### < 제외 대상 >

- ◆ 예술활동증명서가 없는 경우(신청일 기준 소지자 가능)
- ◆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아닌 경우 (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)
- ◆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다른 분야(저소득층도민상생지원금, 아동희망지원금 제외) 신청한 경우
- ◆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및 출연출자기관,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예술인(정규직에 한함)의 경우
- ◆ 활동분야가 예술장르가 아닌 경우
  - ※ 예술 장르 기준은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(정의)에 의거하여 문학, 미술 (응용미술을 포함한다), 음악, 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(演藝), 국악, 사진, 건축, 어문(語文), 출판 및 만화
- ◆ 문화예술과 관계없는 일반 사업체의 직장보험 가입자(본인)인 경우
  - 단,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의 단기일자리, 파트 타임 등으로 근무하는 것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급 가능, 이 경우 **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때에는 소득 등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, 대상자 선정함.**
  - ※ 예술인증명서를 소지한 직장보험가입자중 문화예술과 관계없는 사업주 지원 제외

## 4 신청방법 및 기간

- 신청기간 : 9. 9.(목) ~ 10. 12.(화) 18:00
- 신청방법 : 제주도청 홈페이지 (온라인 신청만 가능)
  - 신청 링크 : <http://www.jeju.go.kr/art/art.htm>
  - \* 신청링크 접속해도 “**신청**” 버튼이 보이지 않으면 홈페이지 상단 로그인 메뉴를 통해서 **로그인해야** 합니다.(제주넷 회원가입 필요함)
  - \* 입력 완료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“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건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” 는 메시지가 휴대폰으로 전송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메시지 없으면 정상접수 안된 것임.)
  - \* 접수기간 중 평일 18:00시 이후 및 주말은 전화상담이 어려우니 신청 페이지 메뉴내 “**질의응답 게시판**” 에 질문을 남기면 다음 날 전화 드립니다.
- 신청·접수 및 지급 절차



## 5 지급 시기

- 1차 지급: 2021. 9. 17.
  - ※ 9.9.~9.14일까지 접수된 예술인 중 지급자격을 갖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
- 2차 지급: 2021. 10. 25일 이후
  - ☞ **직장예술인의 경우 전문가 심사 및 우선순위 산정(예산범위 내)하여 지급대상 결정·지급**

## 6

## 첨부서류 안내

- 그림(jpg 또는 pdf 등) 형식 또는 한글(hwp) 형식 파일 첨부
  - 첨부파일 당 용량은 최대 50MB이며, 업로드 용량과 인터넷 환경에 따라 접수 처리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, 접수가 잘 안되는 경우에는 파일 용량을 줄인 후 다시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.

**※ pdf 파일로 스캔·업로드 하시면 신청 작업이 훨씬 쉽습니다.**

① 【필수】 주민등록초본	- (유의사항) 공고일 이후 발급, <b>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기재되고, 최종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제출</b>
② 【필수】 통장사본(신청 예술인 본인명의)	- (유의사항) 통장 계좌번호 및 예금주가 표시된 부분 스캔
③ 【필수】 중복수령 약약서(서식 붙임 1)	*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.
④ 【필수】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(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대체 가능)	- (유의사항)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되며, <b>직장가입자의 경우 변동내역 기재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해야 합니다.</b> *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,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어야 합니다. * 가까운 건강보험공단(1577-1000)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하고 발급하거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( <a href="http://www.nhis.or.kr">www.nhis.or.kr</a> ) 공인인증서로 발급 가능합니다.
⑤ 【선택】 유형별 증빙자료	
· (유형 1) * 1가지	- 예술활동증명서 (유의사항)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확인서만 가능
· (유형 2) * 2가지 모두	- 장애인 증명서 (유의사항)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가능(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) 하며 <b>유효기간이 기재 안된 장애인복지카드</b> 는 불가합니다. *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제시하고 발급 가능 * 정부 24( <a href="http://www.gov.kr/portal/main">www.gov.kr/portal/main</a> )에서 공인인증서로 재택 발급 가능
	- 문화예술증빙자료(서식 붙임 2)

⑥ 【선택】 (유형 1, 2) 중 직장건강보험 가입자

-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중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·사업체 등에 근무하는 경우

1.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서
  - 근로자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, 업무내용 표기 되어 있어야 함
2. 단체는 고유번호증,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증
3. 기타 문화예술과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

-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중 일반 직장·사업장 근무하는 경우

1. 단기일자리, 파트타임 근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-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서(이 경우 근로자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, 업무내용 표기 되어 있어야 함)
  - 단기일자리 채용 공고문 등 기타 서류
2.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  - 공고일 이후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되며 월별 건강보험료 고지/납부금액 있어야 함
  - 발급기간을 2021년 1월 ~ 2021년 8월로 설정하여 발급

※ 접수마감일(2021. 10. 12. 18:00)까지 서류 보완 및 수정 가능

**7** 기타 참고사항

- 신청 관련 문의가 폭주하여 전화응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, 공고의 모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전화 문의 및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- 도 문화정책과 (☎ 710-3473, 3476, 3416, 3417)
  - 근무시간(주중 09:00~18:00)에만 상담 가능하며 이외 시간에는 신청페이지 메뉴내 "질의응답 게시판"에 게시하면 다음 날 전화 드립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됩니다.

-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판독이 어려울 경우, 관련없는 서류 등 제출시 심사에서 보류되거나,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
  -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 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지급받은 자 중 제주형 5차 다른 분야 지원금을 중복 지원(저소득층도민상생지원금, 아동희망지원금 제외)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할 예정이며 향후 제주도·제주문화예술재단 각종 지원사업 선정 등에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신청서류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중지 및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금 지급방식은 현금 계좌입금이며, 신청자 본인계좌로 입금 원칙(해외계좌 또는 압류방지 계좌로는 지급 불가)입니다.
  - \* 신용불량자 등 본인 명의 통장이 없는 경우 예외 인정
    -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 등 입증자료 제출 시 배우자, 직계존비속 명의 계좌로 지급 등 가능

□ 제출서류 발급방법

구분	내 용	발급방법
1	<p>주민등록초본 (공고일 이후 발급,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기재되고, 최종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제출)</p>	<p>① 온라인발급 ☞ 정부 24(<a href="http://www.gov.kr">www.gov.kr</a>)에서 공인인증서로 발급</p> <p>② 주민센터 발급 ☞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</p> <p>③ 무인민원발급기 ☞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분증 및 지문조회로 발급</p>
2	<p>장애인증명서</p>	<p>① 온라인발급 ☞ 정부 24(<a href="http://www.gov.kr">www.gov.kr</a>)에서 공인인증서로 발급</p> <p>② 주민센터 발급 ☞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</p>
3	<p>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공고일 이후 발급, 대상자 주민등록번호, 이름 전부표기, 직장가입자의 경우 변동내역 반드시 포함)</p> <p>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공고일 이후 발급, 대상자 주민등록번호, 이름 전부표기, 월별 건강보험료 고지/납부금액 있어야 함) ※발급기간을 2021년 1월 ~ 2021년 8월로 설정하여 발급</p>	<p>① 온라인 발급 ☞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(<a href="http://www.nhis.or.kr">www.nhis.or.kr</a>) 공인인증서로 발급</p> <p>② 콜센터: 1577-1000</p> <p>③ 지사방문: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하고 발급</p>
4	<p>예술활동증명서</p>	<p>&lt;온라인 발급 &gt; 한국예술인복지재단 →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(<a href="http://www.kawfartist.kr">www.kawfartist.kr</a>)발급가능 ☞ 로그인→경력지원→예술활동증명→신청내역 확인 →우측 인쇄버튼 클릭 하여 발급 ☎ 전화 문의: 02) 3668-0229/0230</p>



**붙임 2** : (유형 2) 문화예술활동 증빙자료

**최근 5년 이내 문화예술활동 증빙자료 ※ 1건 필수**

개최 장소, 주최·주관 등 정확한 활동사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**출연진 이름이**  
기재된 도록(프로그램북), 팸플릿, 포스터, 보도자료 캡처본(링크삽입x) 등

작품(행사)명		주최/주관	
일시	2020. XX. XX	장소	oo 공연장
비고			

※ 이 서식은 장애예술인 신청자만 해당됩니다.

# 제주 예술인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질의답변

## 1 신청 관련

### Q. 신청방법?

- A) 도청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가운데쪽에 「예술인 긴급생계지원」배너가 있습니다.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화면으로 이동됩니다. 홈페이지 회원으로 먼저 가입하셔야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.

### Q. 배너를 못 찾겠어요.

- A) 도청 홈페이지 검색창에 '예술인 재난'으로 검색하시면 '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' 메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.

### Q. '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'메뉴에 들어갔는데 '신청' 버튼을 못 찾겠습니다.

- A) 회원으로 로그인하셔야 신청 버튼이 보입니다. 로그인을 하시면 오른쪽 맨 밑에 신청 초록 버튼이 보입니다.

**Q. 첨부파일 올렸는데 완료가 안 됩니다.**

- A) 첨부파일당 50MB 이상 올리실 경우 처리 시간이 지연되거나 첨부이 안 됩니다. 파일 용량을 줄인 후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. pdf 파일로 업로드 하시면 신청 작업이 훨씬 수월 합니다.

**Q. 임시저장 기능은 없는지요?**

- A) 네, 임시저장 기능은 없습니다. 반드시 서류가 다 준비된 후에 신청해주세요

**Q. 신청을 한 후 정상접수 확인은 어떻게 되나요?**

- A) 신청 접수가 되었으면 입력하신 핸드폰으로 바로 문자가 발송 됩니다. “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건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” 는 메시지가 휴대폰으로 전송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메시지 없으면 정상접수 안된 것임.)

## **2 지원금 관련**

**Q. 올해 예술인재난지원금 수령했는데 또 신청해도 되나요?**

- A) 네, 상반기 제주예술인재난지원금 수령자도 신청가능 합니다.

**Q. 제주형 5차 다른 분야(개인) 중복신청 가능 여부?**

A) 개인의 경우 저소득층도민상생지원금(10만원), 아동희망지원금(10만원)을 제외한 중복신청은 불가하며, 신청인 기준으로 가장 유리한 분야를 선택해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. 추후 중복수령 여부를 조회하여 중복수령이 발견되는 경우 전액 회수할 예정입니다.

**3 예술인 신청 자격 관련**

**Q. 예술활동증명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한가요?**

A) 예술활동증명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. 참고로 국가에서 지급한 창작지원금 및 타시도 예술인 긴급지원금도 예술활동증명 소지자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타시도 예술인 지원도 동일하여 우리도에서도 **기준을 동일하게 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Q. 예술관련 각종협회 등에서 예술인임을 증명받으면 안되나요?**

A) 협회가 다양하게 존재하기도 하고 예술인 분들 중에서 협회 등을 가입 안 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 국가에서 공인한 분들만 대상으로 정하였음을 양해

부탁드립니다.

**Q. 예술활동증명을 이제라도 발급받으면 안되나요?**

A) 전국 각 지역에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을 위하여 예술 활동증명 신청이 지난 해부터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참고로 발급기간이 현재 3~4개월 소요되고 있습니다. 지금 신청하시면 접수 기간내 발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(<http://www.kawf.kr>)홈페이지 또는 02-3668-0229, 023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**Q. 직장이 있으면 지원이 불가능 한가요?**

A) 이번 재난지원금 취지가 코로나 19로 전시,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이 중단되어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예술인을 지원하는 취지입니다. **따라서 직장 생활로 고정 소득이 있으신 분들과 문화예술과 관계없는 사업주의 경우** 지원 대상이 아님을 양해 부탁드립니다.

다만,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의 단기일 자리, 파트타임 등으로 근무하는 것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급 가능합니다.

이 경우 예산이 한도가 있어 신청 인원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 등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.

**Q. 단기일자리, 파트타임에 대해 정해놓은 기준이 있나요 ?**

A)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이 예술활동이 주업이고 예술활동 유지를 위한 임시 일자리임을 증빙하시면 전문가 심사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.

**Q. 직장보험가입자의 경우 증빙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?**

A 우선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자중 문화예예술과 관계 없는 직장보험가입자중 **사업주는 지원제외** 대상입니다.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.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

**①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중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·사업체 등에 근무하는 경우**

1.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 
- 근로자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, 업무내용 표기 되어 있어야 함
2. 단체는 고유번호증,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증
3. 기타 문화예술과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

**②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중 일반 직장·사업장 근무하는 경우**

1. 단기일자리, 파트타임 근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-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서(이 경우 근로자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, 업무내용 표기 되어 있어야 함)
  - 단기일자리 채용 공고문 등 기타 서류
2.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  - 공고일 이후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되며 월별 건강보험료 고지/납부금액 있어야 함
  - 발급기간을 2021년 1월 ~ 2021년 8월로 설정하여 발급

## 4 제출 서류 발급관련

### Q. 거동이 불편한데 각종 증명서 발급을 어떻게 받나요?

- A) 국민건강보험공단, 장애인증명서, 예술활동증명원 모두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.

### Q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어떻게 받나요?

- A)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-1000 상담 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([www.nhis.or.kr](http://www.nhis.or.kr))를 통해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### Q. 장애인증명서는 어떻게 받나요?

- A)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정부 24([www.gov.kr](http://www.gov.kr)) 사이트에서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.

### Q. 예술활동증명 재발급 어떻게 받나요?

- A) 한국예술인복지재단(<http://www.kawf.kr>) 홈페이지를

참고하시거나 문의사항은 02-3668-0230 으로  
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**Q. 장애인복지카드로 대신하면 안되나요?**

- A) 이번 지원에 모든 증명서를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장애인 자격도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로 제출하셔야합니다.